

제329회 임시회
2014. 4. 14.(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14. 4. 14.(월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4년 3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4년 4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2014년 4월 8일

-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변혜정 여성정책관)

가. 제안이유

- 「2014년 자연학습원 재건축 개관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, 청소년, 일반, 단체, 기관 등이 자연학습, 심신단련, 교양강좌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수비 등을 타지역 수련원 연수비 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설사용 범위 추가 :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치유 강좌 추가
(안 제4조)

- 시설사용료 등 조정 : 제10조 중 “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”를 “별표에서 정한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”로 조문 변경하고, 별표의 금액 조정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전문위원 박기순)

- 본 개정 조례안은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항에 따라, 2014년 재건축 개관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사용료를 타 지역 수련원 연수비 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 문제는 없으며, 재건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.
- 단, 자연학습원의 연수비 및 단순 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 수련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만 비교산출 하는 것은 합리적 산정으로 보기 어려운 바, 자연학습원 운영에 필요한 수지분석 및 유사 시설들과의 가격경쟁력 비교 등 측면에서 적정한 사용료가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치유 강좌

제9조제1항 중 “기관·단체”를 “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”를 “별표에서 정한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[별표]

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 (제10조 관련)

□ 연수비(숙박비, 식비, 시설사용·교육비)

(단위 : 1인당, 원)

구분	숙박비(1박)	식비(1식)	시설사용·교육비 (1일)	비고
초등학생	7,000	4,500	11,000	
중학생	7,500	4,800	11,200	
고등학생	8,000	5,100	11,400	
대학생/일반인	9,000	5,500	11,600	부가세 별도

※ 이 외 체험시설 및 서바이벌게임 이용 시 추가로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

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

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	사용기준	사 용 료		비 고
		고등학생이하	대학생/일반인	
대 강 당	1실/시간	10,000	20,000	대학생/일반인은 부가세 별도
회 의 실	1실/시간	7,000	15,000	
운 동 장	1면/시간	10,000	20,000	
캠프파이어장	1면/시간	10,000	20,000	
야 영 장	1면/1박	5,000	10,000	
체 험 시설	1명/1회	4,000	8,000	
서바이벌게임	1명/1회	4,000	8,000	

※ 이 외 숙박비 및 식비는 연수비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

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사용료 적용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설사용) (생략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도민을 위한 교육 등</p> <p>제9조(시설사용신청) ① 학습원에서 자연 학습, 심신단련,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<u>기관·단체</u>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4조(시설사용)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 치유 강좌</u></p> <p>5. <u>그 밖에</u> 도민을 위한 교육 등</p> <p>제9조(시설사용신청) ① ----- ----- -----<u>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시설사용료 등) 연수와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0조(시설사용료 등) ----- ----- -----<u>별표에서 정한 연수비,</u> <u>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</p> <p><u>시설사용료 및 연수비</u> (제10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1인당/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숙박 (1일)</th> <th>연수 (1일)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초 등 학 생</td> <td>4,700</td> <td>9,900</td> <td rowspan="4">식대는 별도 징수</td> </tr> <tr> <td>중 학 생</td> <td>5,000</td> <td>10,000</td> </tr> <tr> <td>고 · 대 학생</td> <td>5,300</td> <td>10,100</td> </tr> <tr> <td>일 반 인</td> <td>8,000</td> <td>10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연수 1일은 3식을 기준으로 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시설명</th> <th>사용기준</th> <th>사용료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숙 박 실</td> <td>일반실/1박/1인</td> <td>8,000</td> <td>18인용/23실</td> </tr> <tr> <td>강 의 실</td> <td>1실/시간</td> <td>10,000</td> <td>1실/150석</td> </tr> <tr> <td>대 강 당</td> <td>1실/시간</td> <td>10,000</td> <td>1실/300석</td> </tr> <tr> <td>운 동 장</td> <td>1면/시간</td> <td>10,000</td> <td>1면</td> </tr> <tr> <td>잔디 운동장</td> <td>1면/시간</td> <td>10,000</td> <td>3면</td> </tr> <tr> <td>야 영 장</td> <td>1면/1박(텐트설 치면적 9㎡)</td> <td>10,000</td> <td>1,637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숙박 (1일)	연수 (1일)	비 고	초 등 학 생	4,700	9,900	식대는 별도 징수	중 학 생	5,000	10,000	고 · 대 학생	5,300	10,100	일 반 인	8,000	10,500	시설명	사용기준	사용료	비 고	숙 박 실	일반실/1박/1인	8,000	18인용/23실	강 의 실	1실/시간	10,000	1실/150석	대 강 당	1실/시간	10,000	1실/300석	운 동 장	1면/시간	10,000	1면	잔디 운동장	1면/시간	10,000	3면	야 영 장	1면/1박(텐트설 치면적 9㎡)	10,000	1,637㎡	<p>[별표]</p> <p><u>연수비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</u> (제10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수비(숙박비,식비,시설사용·교육비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1인당,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숙박비 (1박)</th> <th>식비 (1식)</th> <th>시설사용· 교육비 (1일)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초등학생</td> <td>7,000</td> <td>4,500</td> <td>11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중학생</td> <td>7,500</td> <td>4,800</td> <td>11,2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고등학생</td> <td>8,000</td> <td>5,100</td> <td>11,4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대학생/ 일반인</td> <td>9,000</td> <td>5,500</td> <td>11,600</td> <td>부가세 별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이 외 체험시설 및 서바이벌게임 이용 시 추가로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</p> <p>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연수비 적용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사용 기준</th> <th colspan="2">사 용 료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고등학생 이하</th> <th>대학생 / 일반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 강 당</td> <td>1실/시간</td> <td>10,000</td> <td>20,000</td> <td rowspan="8">대학생/ 일반인은 부가세 별도</td> </tr> <tr> <td>회 의 실</td> <td>1실/시간</td> <td>7,000</td> <td>15,000</td> </tr> <tr> <td>운 동 장</td> <td>1면/시간</td> <td>10,000</td> <td>20,000</td> </tr> <tr> <td>야 영 장</td> <td>1면/1박</td> <td>5,000</td> <td>10,000</td> </tr> <tr> <td>캠프 파이어장</td> <td>1면/시간</td> <td>10,000</td> <td>20,000</td> </tr> <tr> <td>체 험 시 설</td> <td>1명/1회</td> <td>4,000</td> <td>8,000</td> </tr> <tr> <td>서 바이 벌 게 임</td> <td>1명/1회</td> <td>4,000</td> <td>8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이 외 숙박비 및 식비는 연수비를 적용하고, 식비의 경우 식단변경 요구 시 사용자와 별도 협의.</p> <p>※ 19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생이하 사용료 적용.</p>	구분	숙박비 (1박)	식비 (1식)	시설사용· 교육비 (1일)	비 고	초등학생	7,000	4,500	11,000		중학생	7,500	4,800	11,200		고등학생	8,000	5,100	11,400		대학생/ 일반인	9,000	5,500	11,600	부가세 별도	구 분	사용 기준	사 용 료		비 고	고등학생 이하	대학생 / 일반인	대 강 당	1실/시간	10,000	20,000	대학생/ 일반인은 부가세 별도	회 의 실	1실/시간	7,000	15,000	운 동 장	1면/시간	10,000	20,000	야 영 장	1면/1박	5,000	10,000	캠프 파이어장	1면/시간	10,000	20,000	체 험 시 설	1명/1회	4,000	8,000	서 바이 벌 게 임	1명/1회	4,000	8,000
구 분	숙박 (1일)	연수 (1일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 등 학 생	4,700	9,900	식대는 별도 징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 학 생	5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 · 대 학생	5,300	10,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 반 인	8,000	10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설명	사용기준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숙 박 실	일반실/1박/1인	8,000	18인용/23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 의 실	1실/시간	10,000	1실/150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 강 당	1실/시간	10,000	1실/300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 동 장	1면/시간	10,000	1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잔디 운동장	1면/시간	10,000	3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야 영 장	1면/1박(텐트설 치면적 9㎡)	10,000	1,637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숙박비 (1박)	식비 (1식)	시설사용· 교육비 (1일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등학생	7,000	4,500	1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학생	7,500	4,800	11,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등학생	8,000	5,100	11,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학생/ 일반인	9,000	5,500	11,600	부가세 별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사용 기준	사 용 료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고등학생 이하	대학생 / 일반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 강 당	1실/시간	10,000	20,000	대학생/ 일반인은 부가세 별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의 실	1실/시간	7,000	1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 동 장	1면/시간	10,000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야 영 장	1면/1박	5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캠프 파이어장	1면/시간	10,000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체 험 시 설	1명/1회	4,000	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 바이 벌 게 임	1명/1회	4,000	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법령 발취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4조(사용료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